case
7

방향성 전기강판

요약

사례명	**방향성 전기장판**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H337102 (2024.09.03.)
사실관계	A국에서 방향성 전기강판 생산을 위한 GOES 기판(HTSUS 7225.11.00)을 제조하여 B국으로 수출한 후, 절연코팅, 열평탄화 열처리, 레이저 깎기, 절단 등의 공정을 통해 만든 최종 제품 GOES(HTSUS 7225.11.00)를 미국으로 수출
쟁점 및 판정	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B국의 공정을 통해 최종 제품의 명칭이 GOES 기판에서 GOES로 변경되기는 하나, 성질 및 용도 측면에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A국과 B국에서 행해진 공정의 범위 및 HS code의 변경 여부 등을 고려하였을 때도 B국에서 실질적인 변형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A국임
근거법령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HTSUS(19 U.S.C. § 1202) Chapter 72 Note 1(jj)

Ⅰ 품목개요

품목정보

HS Code	제7225.11호	
세율	한국 기본세율	5%
	미국 기본세율	0%
	한-미 FTA 협정세율	0%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시장정보

제7225.11호 시장 정보

대미 수출액 (단위: 천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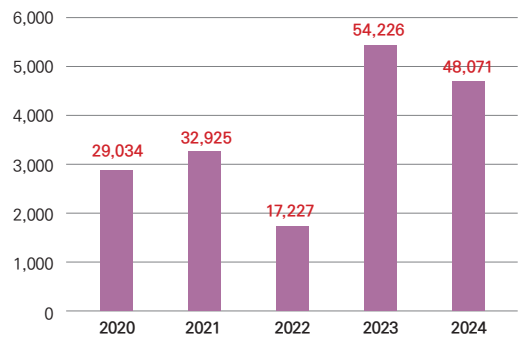

미국 수입 시장 점유율 변화 (단위: %, 한국 수입액 / 미국 총 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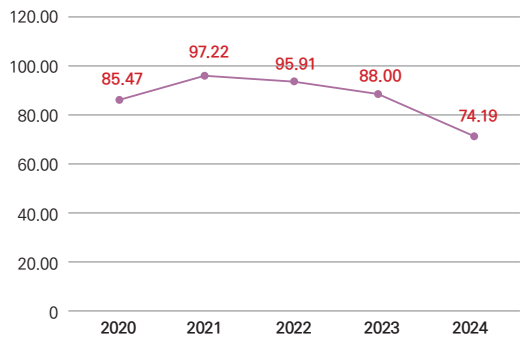

2024년 우리나라 주요 수출 국가 (단위: 천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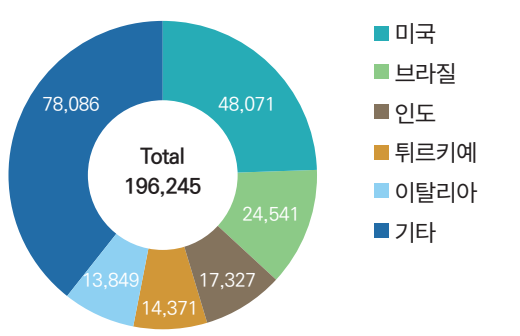

2024년 미국 주요 수입 국가 (단위: 천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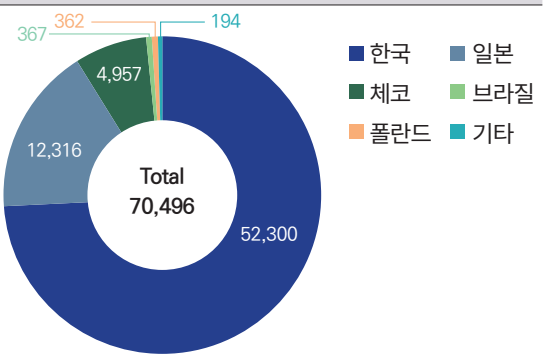

❖ 자료: K-stat

Ⅱ 판정사례

사 례 명 **[방향성 전기강판]**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H337102** (2024.09.03.)

사실관계

요청자	New Torch Technology Thailand Company Limited (대리인: Autolin Inc.)	
제품	제품명	• 방향성 전기강판 (Grain-Oriented Electrical Steel, GOES)
	용도	• 전력 변압기 제조용
	완제품 HTSUS	• 7225.11.00

제조공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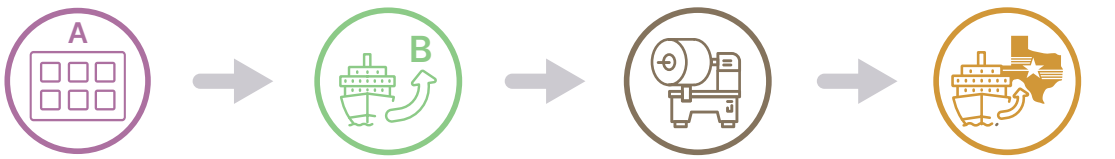

01 A국에서 GOES 기판 제조

02 B국으로 수출 (HTSUS 7225.11.00)

03 GOES 최종 가공

03 미국으로 수출 (HTSUS 7225.11.00)

상세공정

(1) A국 – GOES 기판 제조

1. 제선(Iron-making): 코크스 제조, 철광석 준비, 선철 생산
2. 제강, 정련 및 연속주조: 산소로에서 강철 생산, 금속 결정화 및 연속주조, 주조된 스트랜드를 절단하여 개별 슬래브로 분리
3. 열간압연: 슬래브를 특정 온도로 가열한 후 압연기를 통해 250mm에서 2.5mm 또는 2.3mm까지 두께 감소, 압연 후 목표 코일링 온도로 냉각
4. 열간압연 코일 준비: 열간압연된 코일의 불량 구간 제거 및 재권취
5. 피클링: 열간압연 스트립 표면의 산화 스케일 제거를 위해 염산 용액에 담금
6. 1차 냉간압연: 두께를 2.5mm에서 0.60~0.70mm로 감축
7. 코일 준비: 파손 부분 제거, 스트립 연결을 위한 용접, 권취 등 작업 수행
8. 재결정 및 탈탄 어닐링: 850~880°C에서 연속 어닐링, 냉간압연강의 재결정 유도 및 탄소 제거
9. 코일 준비: 스트립 가장자리 결함 제거를 위한 엣지 트리밍
10. 2차 냉간압연: 두께를 0.60~0.70mm에서 최종 두께인 0.23mm, 0.27mm, 0.3mm 또는 0.35mm로 압연

11. 코일 준비: 재권취 작업 수행
12. 탈지 및 MgO 코팅: 스트립을 탈지한 후 산화마그네슘 기반 코팅 적용
13. 고온 어닐링: 1150~1200°C에서 어닐링하여 전기 절연 코팅을 위한 Mg_2SiO_4 기저층 형성

→ **[GOES 기판]**
방향성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절연 코팅은 없는 상태이고, 완전히 평탄하지 않으며, 가장자리에 결함이 있는 상태의 코일 형태의 기판 생성(HTSUS 7225.11.00)

(2) B국 – GOES 최종 가공

1. 제절연코팅: Mg_2SiO_4 층은 남긴 채로 수분과 브러시로 MgO 코팅 제거 후 경화로에서 건조 및 경화 처리
2. 열평탄화 어닐링: 800~860°C에서 가열
3. 레이저 스크라이빙: 레이저로 기판 일부를 가열 및 냉각하여 자기적 성능 향상
4. 가공 및 코일화: 스트립 가장자리 및 끝단 절단, 코일 형태로 성형
5. 미국으로 수출

쟁점사항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1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검토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CBP 『19 C.F.R. § 134』 규정은 『19 U.S.C. § 1304』의 원산지표시 요구사항과 예외를 규정하며, 134.1(b)에서 원산지표시를 위한 원산지의 결정은 실질적 변형에 기초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9 C.C.P.A. 151 (1982)*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C.A.D. 98) (1940)*

- 그러나, 제조 또는 결합 과정이 경미한 공정(minor process)에 불과하여 해당 물품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3 CIT 220, 542 F. Supp. 1026, 1029 (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 신청자는 Ferrostaal Metals 사례 및 CBP Ruling HQ H242034, HQ H302201를 근거로 B국에서 실시한 어닐링 공정이 실질적 변형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였음
- 특히, H242034 및 H302201에 근거하여 A국에서 수출된 GOES 기판은 반가공품이며, B국에서 최종 상태로 변형된다고 주장

관련 법령 및 분석

❖ 참고 판례: *Ferrostaal Metals Corp. v. United States, 664 F. Supp. 535 (Ct. Intl. Trade 1987)*

- 어닐링 공정이란 강철 제품의 냉간압연 후 연성(ductility)을 복원하기 위해 고온으로 가열한 후, 물 또는 기타 수단으로 급속 냉각하는 공정임
- CIT는 어닐링 공정이 실제 화학적 조성이나 물리적 치수를 변화시키지는 않으나, 강철 내 탄소와 질소의 분포에 영향을 미쳐 냉간압연된 강철의 변형 에너지를 제거하고, 강도는 낮추는 대신 연성과 성형성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
- CIT는 연성과 강도가 강철의 중요한 특성이며, 어닐링 공정은 강철의 성질(character)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킨다고 판단하였고, 이 공정을 통해 새롭게 부여된 강도와 연성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도록 용도가 전용되었다고 판단
- 비슷한 맥락에서 CIT는 판유리를 가열한 뒤 급속 냉각하여 강도를 증가시키는[일반적으로 템퍼링(tempering)이라 불림] 공정 또한 새로운 상업적 제품을 창출한다고 판결한 바 있음
  [Guardian Industries Corp. v. United States, 3 CIT 9, 16 (1982) 인용]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242034*

- 중국과 일본에서 제조된 냉간 가공 무계목 강관(cold finished seamless pipe)의 원산지 검토
- 중국에서 최초 제조자가 그린 파이프를 냉간 인발 공정을 통해 생산
- 해당 그린 파이프는 특정 최종 용도에 적합하지 않고 어떠한 산업 성능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반가공 제품으로 간주됨
- 일본에서 그린 파이프를 1차 어닐링, 냉간 인발, 2차 어닐링, 교정을 포함한 여러 단계의 공정 수행
- CBP는 반가공 제품이 ASTM A312 규격 요건을 충족하는 완제품으로 전환되었기에, 일본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Ferrostaal 판례에 부합하게 어닐링 공정이 초기 그린 파이프에 새로운 명칭, 특성, 용도를 부여한다고 판단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2201*

- 독일에서 알루미늄 호일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중국산 알루미늄 호일스톡의 원산지 검토
- 해당 사례에서 중국산 호일스톡은 소비자 사용에 적합하지 않은 반가공 재료로 간주
- 독일에서 1차 어닐링, 압연, 코일 형태로 권취, 최종 어닐링 수행
- CBP는 최종 어닐링 공정이 압연 공정으로 인해 변형되거나 수정된 결정 구조의 재결정화를 유도하였으며, 소재의 연성과 연화를 복원하고 호일의 원자 구조를 재구성하여 기계적 특성을 변화시켰다고 판정

- 그러나, 위와 대조적으로 어닐링 공정이 광범위하거나 복잡하지 않고 물품의 용도를 변화시키거나 제한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 변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도 존재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17502*

- 비방향성 전기강으로 된 합금강 코일의 원산지 검토
- 미국산 풀 하드(full-hard) 전기강 코일(HTSUS 7225.19.00)이 독일로 수출되어 기계적, 전자기적 특성을 달성하기 위해 어닐링 공정이 이루어지고 절연 바니시가 코팅됨
- CBP는 "ASTM A677 규격은 바람직한 코어 손실(core-loss) 값 및 투자율(permeability)과 같은 특성이 압연 공정(mill processing) 중에 이미 형성된다는 점을 나타낸다."고 언급
- CBP는 "미국에서의 압연 공정은 특정 특성을 부여하며, 수출 시점에서 해당 코일은 어닐링 및 코팅 공정에 사용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명시

관련 법령 및 분석

- 따라서, 해당 강재는 독일 수출 당시 이미 전기용으로 사용될 의도가 있었으며 "어닐링 및 코팅 공정은 그러한 용도를 단지 진전시키는 데 그친다."고 판정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55103*

- 스테인리스강 봉재 및 와이어 로드에 대한 용액 담금질 및 어닐링 공정이 강재의 연성, 연화성, 내식성 등을 극대화하더라도, 강재가 다기능적 용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554592*

- 강재의 연성을 단순히 복원하기 위해 설계된 어닐링 공정은 원래 제품의 인장 강도 및 항복 강도를 근본적으로 변경하여 제품을 업그레이드하는 어닐링 공정과 구별되며, 후자의 경우에 실질적 변형에 해당한다고 판단

- CBP는 HTSUS Chapter 72 Note 1(jj)에서 '반가공품(GOES 기판)에는 이미 코팅이 완료되어 코일 형태로 가공된 제품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판은 반가공품이 아님을 밝힘
- 또한 Ferrostaal 사례에서 사건의 공정은 두 단계(어닐링, 아연도금 공정)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사례에서 법원은 어닐링 공정이나 도금 공정 중 어느 하나만으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Ferrostaal 사례를 인용하기 어려움을 명시
- Ferrostaal 사례 이후 CBP는 일반적으로 어닐링에 따른 실질적 변형 여부를 처리 시간, 공정의 복잡성, 강재의 기계적 성질과 용도에 미치는 영향, 투입된 설비 비용 및 공정으로 인한 부가가치 등에 따라 판단함

판정 결과

☑ B국의 공정은 GOES 기판의 실질적 변형(명칭, 성질, 용도)을 초래하기에 충분하지 않음

- 명칭 B국의 공정을 거친 후 GOES 기판에서 GOES로 명칭이 변경되기는 하나 명칭 기준은 실질적 변형을 판단하는 세 가지 요소 중 가장 중요도가 낮은 요소임
- 성질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GOES 기판은 코일 형태로 B국으로 수출되며, 최종 완성된 GOES의 화학적 조성은 GOES 기판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최종 가공 공정은 GOES의 물리적 두께에도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음. 더불어, 신청자는 국가 B에서의 최종 어닐링 공정이 GOES 기판의 자기적 특성과 연성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하지만, 동시에 A국에서 수출되는 GOES 기판 자체가 이미 비전기강 보다 훨씬 우수한 자기 특성을 갖춘 전기강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A국의 GOES 기판이 반가공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HTSUS Chapter 72 Note 1(jj)에 따라 해당 제품은 반가공품으로 분류될 수 없음
- 용도 GOES 기판은 국가 A에서 출하 시 이미 전기적 용도를 목적으로 설계된 전기강임이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국가 B에서의 가공 이전부터 이미 정해진 최종 용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국가 B에서의 공정은 기존 용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용도를 단순히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정도에 그치므로 용도의 변경이 없음

☑ 이 외에도 법원이 실질적 변형을 판단할 때는 부수적 또는 추가적 요소들을 고려하는데, 수행된 작업의 범위와 성격, 가공 중 발생한 부가가치, 생산재에서 소비재로의 전환, 관세 분류의 변경 등이 고려될 수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부수적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공정 범위·설비·부가가치 측면에서 역시 A국에서의 공정이 압도적이고, GOES 기판과 최종 GOES의 HS code 또한 동일하므로 B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결론

✔ B국의 공정을 통해 최종 제품의 명칭이 GOES 기판에서 GOES로 변경되기는 하나, 성질 및 용도 측면에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A국과 B국에서 행해진 공정의 범위 및 HS code의 변경 여부 등을 고려하였을 때도 B국에서 실질적인 변형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A국임

Ⅲ 시사점

- 전기강판과 같은 고기능성 금속 소재의 경우, 소재 자체의 완성도와 산업적 특성을 이미 갖췄다면 이후 용도와 기능을 돕는 후처리만으로는 실질적 변형 인정이 어려움
- CBP에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자사 제품의 원산지 사전판정을 신청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리한 판례 및 사전심사 사례를 참고하여 신청할 필요가 있음

Ⅳ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02201 (2020.04.06.), https://rulings.cbp.gov/ruling/H302201
- CBP Ruling HQ H317502 (2021.03.26.), https://rulings.cbp.gov/ruling/H317502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HTSUS(19 U.S.C. § 1202) Chapter 72 Note 1(jj), https://hts.usitc.gov/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num=0&edition=prelim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 Ferrostaal Metals Corp. v. United States (1987),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1504219/ferrostaal-metals-corp-v-united-states/?q=Ferrostaal+Metals+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